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834호 2011. 7. 15.(금)

차 례

훈 령

-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287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
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 ----- 1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-31호 2011년도 개발제한구역 외 개별공시지가
지목별 평균치 고시 ----- 7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-75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[전기] 모집 정정 공고 -- 8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 [032-560-4140]

인천광역시 서구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

2011년 7월 15일

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287호

인천광역시 서구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.

제3조(부패행위 및 신고의무자) ① "부패행위"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② 부패행위 신고의무자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의 모든 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제4조(신고의무대상)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알게 된 부패행위에 관해서는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제1항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.

제5조(신고의무 위반 행위의 신고와 확인) ① 부패행위를 인지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감사 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"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"를 작성하여 신고(전자메일 포함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본인 및 부패행위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감사 담당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감사 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신고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) ① 감사 담당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패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(신고의무 위반)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.

1.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자
2. 부패행위자의 소속 부서의 직원
3.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·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상급기관 해당 부서 책임자

② 감사 담당관은 부패행위자의 차상급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(신고의무 위반)를 조사할 수 있다.

제7조(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절차) ① 감사 담당관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.

1. 자체 적발 사건 :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조사 시작부터 조사 종료 전까지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
2. 외부기관 적발 사건 :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

- ② 감사 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패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 "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 조사결과"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 감사 담당관은 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, 비밀누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사대상·조사시점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.

제8조(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) ① 감사 담당관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 1 "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"을 참작하여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불가피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양정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제9조(징계절차)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, 외부기관 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
1. 직근 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⇒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책임
2. 차상급자, 소속 부서의 직원 등 기타 공직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⇒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책임
3.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기준보다 낮은 징계책임 부과
4. 징계 기준

구분	부패행위자		신고의무 위반자	
			직근 상급자	기타 공직자
징계 내용	중 징 계	파면	해임	강등
		해임	강등	정직
		강등	정직	감봉
		정직	감봉	견책
	경 징 계	감봉	견책	※ 기타
		견책	※ 기타	※ 기타

※ 기타 : 「공무원 징계령」 상의 징계는 아니지만, 훈계·주의 등 명칭에 관계 없이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

(별지 제1호서식)

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				
신고인	성 명	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
	소 속		전화번호	
	주 소			
부패행위자	성 명		직 위 (직급)	
	소 속			
※ 신고내용을 확인·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⇒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동의				
신 고 내 용				
증명자료 목 록	※ 증명자료 첨부			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- 31호

2011년도 개발제한구역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

2011년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인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안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관계 서류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GB관리팀, ☎ 560-468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1. 7. 15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(단위:원/㎡)

지 목	지목별평균치	비 고	지 목	지목별평균치	비 고
전	351,573		하 천	103,360	
답	228,465		제 방	128,458	
과 수 원	272,884		구 거	127,270	
목장용지	449,497		유 지	159,508	
임 야	83,481		수도용지	152,131	
광 천 지	-		공 원	224,434	
염 전	226,469		체육용지	153,682	
대	994,028		유 원 지	-	
공장용지	730,656		종교용지	891,599	
학교용지	986,885		사 적 지	-	
도 로	236,463		묘 지	143,856	
철도용지	230,548		잡 종 지	403,840	
주 유 소	1,028,496		창 고	521,332	
주 차 장	1,716,938		양 어 장	311,014	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- 751호

주택건설공사 감리자[전기] 모집 정정 공고

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2조 제8항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·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선정하고자 모집 공고[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-733호]한 사항 중 아래와 같은 정정사항이 있어 정정 공고합니다.

2011. 07. 12.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□ 정정공고내용

2. 사업내역

바. 복수예비가격(VAT별도)를 복수예비가격으로 정정

① 당초

사 업 내 역	
가. 사 업 명 : 당하지구 22블록 1~14로트 ○○아파트 신축공사 나. 사업주체 : (주)무궁화신탁 대표 송인명 다. 시 공 자 : ○○건설 다. 설 계 자 : (주)종합건축사사무소 태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이 하 생 략 -</p>	<p style="color: red; font-weight: bold;">바. 복수예비가격(VAT별도)</p> ○감리대가 : 실비정액가산방식 (부가가치세 포함) ○산출범위 : 감리대가의97±3%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이 하 생 략 -</p>

② 변경

사 업 내 역	
가. 사 업 명 : 당하지구 22블록 1~14로트 ○○아파트 신축공사 나. 사업주체 : (주)무궁화신탁 대표 송인명 다. 시 공 자 : ○○건설 다. 설 계 자 : (주)종합건축사사무소 태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이 하 생 략 -</p>	<p style="color: red; font-weight: bold;">바. 복수예비가격</p> ○감리대가 : 실비정액가산방식 (부가가치세 포함) ○산출범위 : 감리대가의97±3%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이 하 생 략 -</p>

※ 정정공고내용 이외의 일정 등에는 변동사항 없으며,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건축과(☎032-560-47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